

2022년도 임금협약 결과 안내

- 2022. 7. 1. 상견례 및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7회 교섭 실시
 - 본교섭 3회, 실무교섭 1회, 간사교섭 3회
- 2022. 10. 4.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결과 **77.6% 찬성** 통과

◇ 교섭 개요

- (실시근거) 2021년도 임금·단체협약서 제61조(교섭요구)
- (교섭당사자) 대한적십자사 회장,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
- (교섭대상) 2022년도 적용 임금협약

◇ 주요 합의사항

- ① 임금인상 : 2020년도 총액 대비 1.4% 정액 인상
 - 2022년도 기획재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
- ② 본사, 본부, 의료원 근무 직원(파견직원 포함)에 대하여 업무수당 50,000원 지급
 - 업무수당 제외대상: ¹직원및고용원 정원운영규정 [별표 제1호] 책임보직 기준표 해당 직원, ²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 업무종사자, ³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가 본사·본부·의료원으로 지정된 직원
- ③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핸드폰 지원비 지급
 - 혈액원 간호팀 근무편성 담당직원(1명), 품질관리팀 간호·보건행정 업무 담당직원(각 1명), 권역 및 혈액원 수급 담당직원(1명)에게 핸드폰 지원비 30,000원 지급
- ④ 야간당직근무자 조식비 지급
 - 야간당직근무자(혈액원 및 공급소, 혈장분획센터에 한함) 1야당 7,000원 조식비 지급

- (변경 전)야간당직자 식비 1회, 간식비 1회 지급 ▶ (변경 후) 식비 2회 (석식, 조식)지원

⑤ 병원 근무자 위험수당 지급대상 확대

- QPS실, 감염관리실, 공공의료협력(사업)팀, 진료협력실, 간호팀, 교육센터, 사회사업실, 안전·보건관리자에게 위험수당 20,000원 지원
 - 원무팀 진료비 접수·수납업무 근무 시 위험수당 20,000원 지원
- ※ 진료비 접수 수납 담당자에서 업무 종사자로 대상 범위 확대

⑥ 공로연수자에 대한 직책보조비 감액지급

- 직원및고용원 정원운영규정 [별표 제1호] 책임보직기준표에 해당하는 직원이 직원운영규정 제26조의3(공로연수)에 해당되는 경우 1~4급 비보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직책보조비를 지급

◇ 적용시기

- 2022년도 임금 인상분은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
- 업무수당, 핸드폰 지원비, 야간당직근무자 조식비, 위험수당, 직책보조비 관련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(적용). 끝.